

우리동네키움센터(성산동,망원동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 - 5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4. 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,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 중심의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·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: 5년
- 2) 위탁운영 시설현황

시설명	성산동우리동네키움센터	망원동우리동네키움센터
위치	마포구 월드컵로36길 52,2층	망원동 458-46 (망원한강아이파크 커뮤니티센터 1층 내)
면적	102.15㎡	90㎡

- 3) 위탁사무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- 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다.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시설명	보조금	비고
성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	107,436 (국:15,112 / 시:83,924 / 구:8,400)	
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	142,671 (국:44,713 / 시:93,058 / 구:4,900)	

라. 세부추진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5. 22. ~ 6. 12.
- 2) 신청서 접수 : 2019. 6. 13. ~ 6. 21.
- 3) 선정심사 : 2019. 6. 26. ~ 7. 3. (기간중 1일)
- 4) 심사결과 발표 : 2019. 7. 9.
- 5) 협약체결 : 2019. 7월 중
- 6) 업무개시 : 2019. 8. 1. (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사 완료 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지방자치법>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 아동복지법 >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9. 1. 15.]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